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5. 21.

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



- 1. 건 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40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	주소
다카○	77.06.06.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	폐문부재, 수취인불명	서울시 광진구 (이하 생략)

- 4. 공고기간: 2024.5.21. ~ 2024.6.4.(15일간)
- 5. 기타사항은 성동광진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임영준(Tel. 02-2047-990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